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

□ **대상펀드명** : 트러스톤 아시아장기성장주40 퇴직연금 증권투자신탁 [채권혼합]

□ **변경 사항** : ① 제10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②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효력 발생일** : 2025. 7. 25.

□ **정정 내용**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	-	<u>2025. 5. 30. 기준</u>
	제 10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u>2025. 5. 10. 기준</u>
투자실적추이(연평균 수익률)	제 10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u>2025. 5. 10. 기준</u>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	<u>2025. 6. 30. 기준</u>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 자신탁의 연혁] 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 [채권] <신 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 자신탁의 연혁] 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 [채권] <u>2025. 7. 25.: 자투자신탁 삭제</u>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	<u>2025. 6. 30. 기준</u>
5. 운용전문인력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최근 기준으로 기재	-	<u>2025. 6. 30. 기준</u>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라. 모자형 구조	채권 모투자신탁 비교지수 변경 및 듀레이션 구간 삭제	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 [채권]: 비교지수: <u>KIS 국공채 3 개월 ~10 년 지수 × 100%</u>	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 [채권]: 비교지수: <u>KIS 국공채지수 × 90%+Call × 10%</u>



		<p>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u>기본적으로 듀레이션 3~4.5년 수준을 유지하되, 국채, 지방채, 특수채, 은행채 등 우량채권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 수익률 달성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입니다.</u></p>	<p>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국채, 지방채, 특수채, 은행채 등 우량채권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 수익률 달성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입니다.</p>
<p>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p>	<p>기재 보완</p>	<p>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80%이하를 투자하고, 투자신탁재산의 40%이하를 아시아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u>또한 운용 규모 및 시장 상황에 따라 듀레이션 1~2년 수준인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과 듀레이션 3~4.5년 수준인 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투자 비중을 조절합니다.</u></p>	<p>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80%이하를 투자하고, 투자신탁재산의 40%이하를 아시아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u>채권 모펀드에 투자는 운용 규모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중기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과 중장기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 비중을 조절합니다.</u></p>
	<p>주요 투자대상국가 현황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p>	<p><input type="checkbox"/> 주식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주요 투자대상국가의 현황] <u>2024.1 월 기준</u></p>	<p><input type="checkbox"/> 주식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주요 투자대상국가의 현황] <u>2025.1 월 기준</u></p>
	<p>채권 모투자신탁 듀레이션 삭제</p>	<p><input type="checkbox"/> 채권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u>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 듀레이션 1~2년, 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 듀레이션 3~4.5년</u></p>	<p><input type="checkbox"/> 채권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u><삭 제></u></p>

<p>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p>	<p>제 10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p>	<p>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 (97.5% VaR 모형 사용) : <u>11.39%</u></p>	<p>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 (97.5% VaR 모형 사용) : <u>11.69%</u></p>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p>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 제 10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p>	<p>- -</p>	<p><u>2025. 5. 30. 기준</u> <u>2025. 5. 10. 기준</u></p>
<p>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p>	<p>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p>	<p>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신 설)</p>	<p>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u>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 단계에서 별도의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u></p>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u>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u>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	---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제 10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u>2025. 5. 10. 기준</u>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제 10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u>2025. 5. 10. 기준</u>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제 10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u>2025. 5. 10. 기준</u>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제 10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u>2025. 5. 10. 기준</u>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최근 기준으로 기재	-	<u>2025. 6. 30. 기준</u>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 연도 요약 재무내용	최근 기준으로 기재	<u>제 26 기(2023.12.31)</u> <u>제 25 기(2022.12.31)</u>	<u>제 27 기(2024.12.31)</u> <u>제 26 기(2023.12.31)</u>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최근 기준으로 기재	-	<u>2025. 6. 30. 기준</u>